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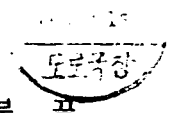
(제3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 94. 9. 16)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 개정에 참고하고자 하니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1995. 3. 11일 까지 건설행정과장 참조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사항이 없으면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것임

가. 의견조회 사항 : 별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첨부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 기획담당관, 서관 (1-5), 서국 (1-14), 서본부 (1-5), 서구 (1-22, 건설관리과장)

~~32~~

134

건행 58150-

1995. 2.

(제4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 94. 9. 16)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별첨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사항 : 별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첨부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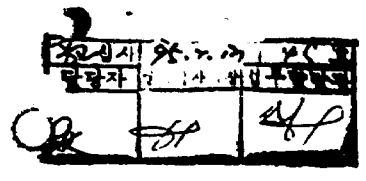
수신처 : 건설교통부(도로관리과장),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사장

137

33

136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 8 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 1994.9.16)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권한위임규정 삭제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조례 제3144호, '94.12.31)에 규정
- 나. 진입로 점용요율 변경(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0.025를 곱한 금액)
- 다. 지하시설물에 에스양카(요율 0.02)를 규정
- 라. [별표1] 비고6-2를 신설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 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31-6371~3, 6771~3, FAX 731-6374)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조 제3항중 "자치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자치구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제 9조를 삭제한다.

[별표1] 제3호중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한다.

제4호중 진입로의 점용료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호중 "육교상가, 기타"를 "육교상가, 에스안카, 기타시설물"로 한다.

비고 제6호중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를 "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송유, 송열 설비"로 한다.

비고 제6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본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